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 명: 이무현 소유물건
(2025타경8335)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신우탁

감정평가서번호: A1T3250617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转载)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81길 110(남성로), 3층
지 사 TEL. (053)753-9554 FAX. (053)754-9554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장영은

장영은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지사장 대구경북지사장 (서명날인)



| | | | | |
|----------------|-------------------------|------------|------------|------------|
| 감정평가액 | 사천이백만원정 (₩42,000,000.-) | | | |
| 의뢰인 |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신우탁 | 감정평가 목적 | 법원경매 | |
| 제출처 | 경매2계 | 기준가치 | 시장가치 | |
| 소유자 (대상업체명) | 이무현 (2025타경8335) | 감정평가 조건 | - | |
| 목록표시 근거 | 귀 제시목록 | 기준시점 | 조사기간 | 작성일 |
| 기타 참고사항 | - | 2025.07.22 | 2025.07.22 | 2025.08.13 |

| 감정평가내용 | 공부(公簿)(의뢰) | | 사정 | | 감정평가액 | |
|--------|------------|-------------|------|-------------|-------------|------------|
|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종류 | 면적(㎡) 또는 수량 | 단가 | 금액 |
| | 구분건물 | 1세대 | 구분건물 | 1세대 | - | 42,000,000 |
| | 이 | 하 | 여 | 백 | | |
| 합계 | | | | | ₩42,000,000 | |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최인철

최인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소재 “북삼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북삼빌라 제3층 제302호 (전유면적: 72.25㎡)” 단위세대에 대한 경매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감정평가에 관련된 법적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 및 감정평가 제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3. 실지조사 실시기간, 기준시점 및 기준가치

(1)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기준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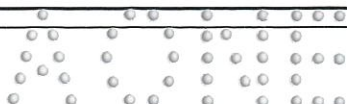
본건의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년 07월 22일로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가격수준 등을 확인하였으며,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7월 22일로 하였습니다.

(2) 기준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4. 감정평가의 조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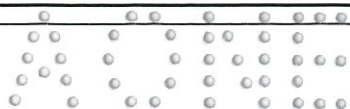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대상물건의 개요

| | | | | | | |
|----|------------|-------|--------------------------|----------|-----------|------------|
| 기호 | 소재지 |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345-2번지 | | | |
| | 건물명, 층, 호수 | | 북삼빌라 제3층 제302호 | | | |
| | 용도 | | 연립주택 | | 사용승인일 | 1990.08.14 |
| | 층수 | 호수 | 전유면적 (㎡) | 공용면적 (㎡) | 대지권면적 (㎡) | 공동주택가격 (원) |
| 가 | 제3층 | 제302호 | 72.25 | 6.2 | 48.32 | 26,100,000 |

6. 그 밖의 사항

- (1) 본건의 소재지 · 지번 · 호수 · 면적 등은 대구지방법원 평가명령서 및 제반 공부자료 등을 기준하였으며, 본건의 호별위치 등은 건축물대장상 현황도 및 현장에서 탐문조사 된 사항을 근거로 표시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본건은 거주인 부재로 구조확인 및 내부 마감상태 등은 동일 연립주택 내 동일면적 단위세대의 일반적인 마감상태 및 통상설비 등을 참조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분건물과 대지사용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 건물의 구분 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의하여 평가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에 부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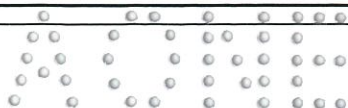
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이 요구되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상물건의 성격·평가목적 또는 평가조건에 따라 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원가방식, 시장성의 원리를 따르는 비교방식 및 수익성의 원리를 따르는 수익방식이 있습니다.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본 평가에서 구분건물은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용재, 부대설비, 시공정도, 현상 및 인근지역 내 동류형·유사형 구분건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상기 방법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액과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전유부분(건물)과 대지권이 일체로 효용을 발생시키는 대상물건의 특성 등에 의거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

2.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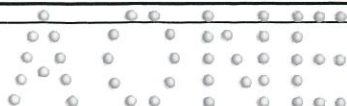
[자료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체계]

| 기호 | 소재지 | 건물명 | 층/호수 | 전유면적 (㎡) | 대지권 (㎡) | 거래금액(원) | 거래시점 |
|----|----------------|----------------|-------|----------|---------|--------------|------------|
| | | | | | | 전유면적당단가(원/㎡) | 사용승인일 |
| A | 북삼읍 인평리 345-2 | 북삼빌라 | 3/300 | 77.87 | 52.08 | 46,000,000 | 2024.09.19 |
| | | | | | | 590,728 | 1990.08.14 |
| B | 북삼읍 인평리 673-1 | 북삼굿 팔레스빌라 101동 | 2/200 | 42.88 | 27.3928 | 25,000,000 | 2022.07.07 |
| | | | | | | 583,022 | 2005.11.08 |
| C | 북삼읍 인평리 1050-9 | 대성그린 7차 | 2/200 | 77.28 | 54.3993 | 50,000,000 | 2025.04.27 |
| | | | | | | 646,997 | 1998.06.11 |

3. 감정평가액의 산출 및 결정

(1) 적용사례의 선정

인근 시세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고 있고 본건과 위치별 효용이 유사하며, 건물의 구조와 설비, 입지조건, 주변환경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에서 비교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 A]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감정평가에 있어서 비교사례로 선정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치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기 선정된 거래사례는 특별한 사정의 개입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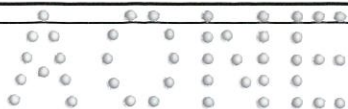
(3) 시점수정

1) 시점수정 기준

- 시점수정이란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치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준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입니다.
- 거래사례는 구분건물(연립주택)로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보고서」 상 주요지역·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이 유사하고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상북도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시점수정치 내용 (기준월: 2025.03 = 100)

| 기 간 | 매매가격지수 | 비 고 |
|----------------------------------|-----------------------|------------------------|
| 2025.07.22. 매매가격지수 | 99.7 | 2025년 06월 지수 |
| 2024.09.19. 매매가격지수 | 100.3 | 2024년 08월 지수 |
| 누 계 (2024.09.19 ~ 2025.07.22) | -0.598% (0.99402배) | 99.7 / 100.3 ≒ 0.994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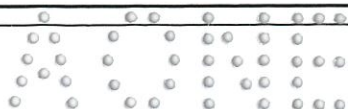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가치형성요인비교

| 조건 | 구 분 세항목 | 격차율 | | 비고 |
|----------|-----------------------------------|-------|------|---------------------------------------------|
| | | 사례 | 대상 | |
| 외부 요인 | 대중교통의 편의성 | 1.00 | 1.00 | 본건은 거래사례와 동일 연립주택부지 내에 소재하는 바, 외부요인은 동일합니다. |
| | 교육시설 등의 배치 | | | |
| |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 | | |
| | 차량이용의 편의성 | | | |
| |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 | | |
| |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시공업체의 브랜드 | | | |
| 내부 요인 |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 1.00 | 1.00 | 본건은 거래사례와 동일 연립주택 내에 소재하는 바, 내부요인은 대등시됩니다. |
| |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 | | |
| |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 | | |
| |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 | | |
| |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 | | |
| 호별 요인 | 층별·위치별(동별, 라인별)·향별 효용 | 1.00 | 1.00 | 본건은 거래사례와 제반 호별요인 유사합니다. |
| |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 | | |
| | 내부 평면방식(베이) | | | |
| |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 | | |
| 기타 요인 |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0 | 1.00 | 본건과 대등합니다. |
| 누 계 | | 1.000 | | 1.00 x 1.00 x 1.00 x 1.00 |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 기호 | 거래사례 단가(원/㎡) | 사정 보정 | 시점 수정 | 가치형성 요인비교 | 산정단가 (원/㎡) | 전유면적 (㎡) | 산정금액 (원) | 결정금액 (원) |
|----|-----------------|----------|----------|--------------|---------------|-------------|-------------|-------------|
| 가 | 590,728 | 1.000 | 0.99402 | 1.000 | 587,195 | 72.25 | 42,424,839 | 42,0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참고가격 자료

1. 인근 평가사례

[자료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기호 | 소재지 | 건물명 | 층/호수 | 전유면적 (㎡) | 대지권 (㎡) | 평가 목적 | 평가액(원) | 기준시점 |
|----|---------------------|------|-------|----------|---------|-------|--------------|------------|
| | | | | | | | 전유면적당단가(원/㎡) | 사용승인일 |
| a | 북삼읍 인평리 610-3 | 정원빌라 | 1/100 | 64.62 | 40.0625 | 경매 | 32,000,000 | 2024.01.22 |
| | | | | | | | 495,202 | 1991.12.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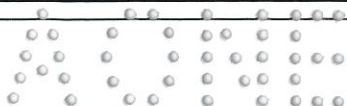
2. 유사 부동산 가격수준

| | |
|------------|---------------------------------------------------------------------------------------------------------------------------------------------|
| 인근 가격수준 | 부근 일대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인근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노후도 및 시공상태, 위치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존재하나, 본건 연립주택의 경우 전유면적당 580,000원/㎡ 내외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

3. 『집합건물/전체』의 낙찰가율 통계분석

[출처: 인포케어]

| 지역통계 | 경상북도 | 칠곡군 | 북삼읍 |
|--------|--------|--------|--------|
| 1년간 평균 | 69.87% | 78.94% | 80.73% |
| 6개월 평균 | 70.46% | 79.71% | 81.66%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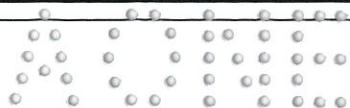
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 기호 | 소재지 | 층·호수 | 전유면적 (㎡) | 대지권면적 (㎡) | 감정평가액(원) | 비고 |
|-----------|--------------------------------|-------|-------------|--------------|--------------|----|
| 가 |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345-2번지 북삼빌라 | 3/302 | 72.25 | 48.32 | 42,000,000 | |
| 감정평가액(합계) | | | | | ₩ 42,000,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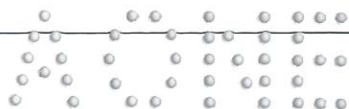
2. 결정의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 기준」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에 근거하여 비교가능한 거래사례 및 인근평가사례,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낙찰건의 통계분석 등에 의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준가액으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4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 감정평가액 | 비 고 |
|------------|---------------------------------------------------------------------------|---------------|-----------------|------------------------------------------------|----------|-------|----------------------------------------------------------------------|----------------|
| | | | | | 공 부 | 사 정 | | |
| 1 가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도로명 주소]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3길 14 | 345-2 북삼빌라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1-3층 | 각 311.72 | | | |
| | " | 345-2 | 대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3층 302호 철근콘크리트조 | 576 | 72.25 | 42,000,000 | 비준가액 공용면적포함 |
| | | | | 소유권 1.----- | 48.32 | 48.32 | | |
| | | | | 대지권 | 576 | | | |
| 합 계 | | | 이 | 하 | 여 | 백 | 배분내역 토 지 : 29,400,000 건 물 : 12,600,000 ₩42,000,000.- | |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소재 "북삼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북삼빌라 제3층 제302호(전유면적: 72.25㎡)"단위세대로서, 부근 일대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및 편리성 등으로 보아 주위환경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일반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됩니다.

3. 건물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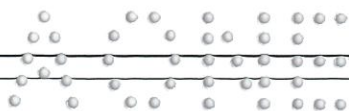
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건 중 제3층 제302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타일마감,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등,
바닥: 장판지 깔기 및 타일마감 등,
창호: 새시창입니다.

4. 이용상태

가)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접면도로와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현황 "연립주택부지"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폭 약 4m의 도로에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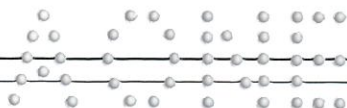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복삼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2) 기 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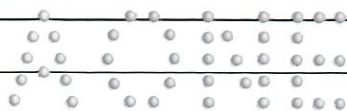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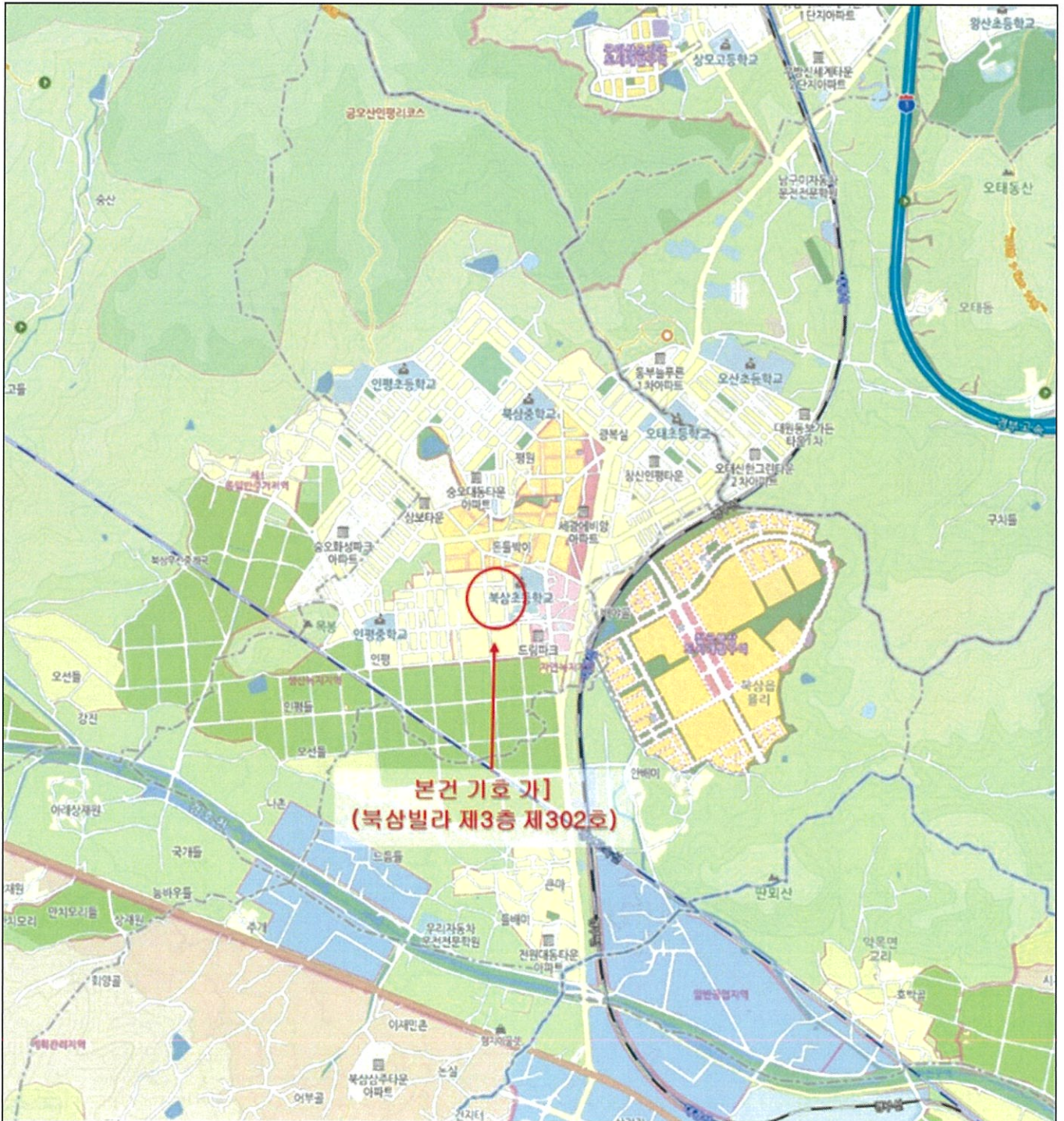


광역위치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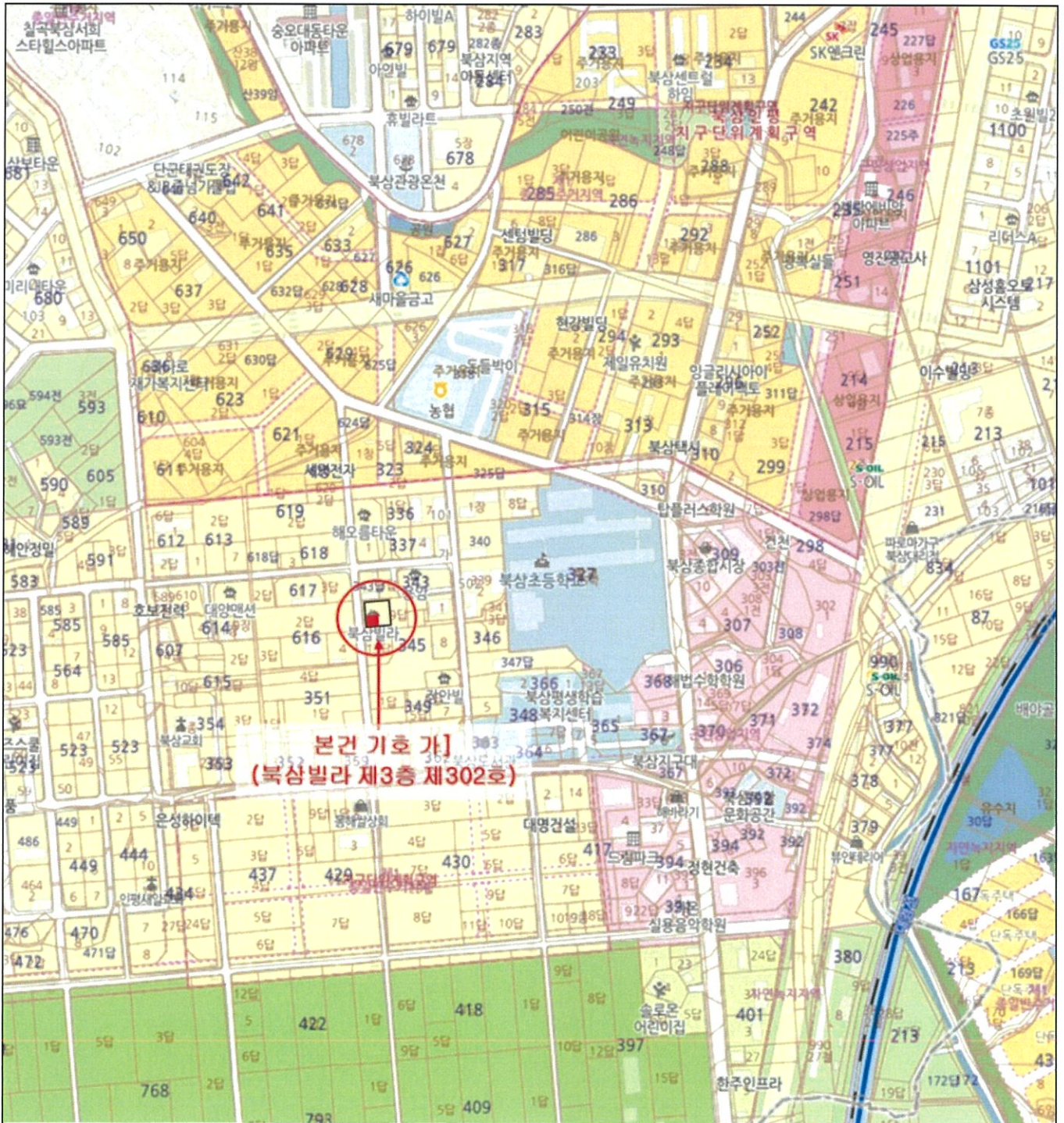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三四五의二번지



위치도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三四五의二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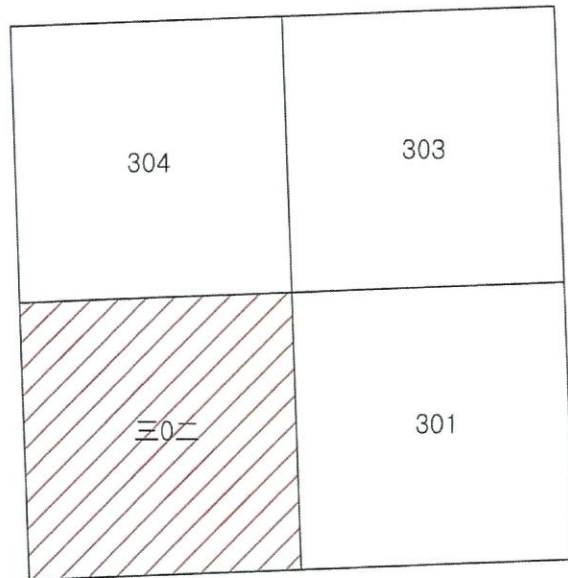


본건 기호 가]
(북삼빌라 제3층 제3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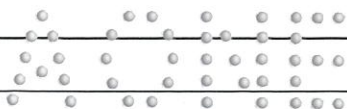
지 적 개 황 도



북삼빌라 제3층 호별배치도



본건 기호 ㉠
(제3층 제3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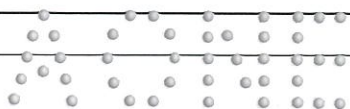
사 진 용 지



본 연립주택 전경



본 연립주택 입구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